

근로(인적용역)자 소득구분이 어려우신가요?

소득구분 체크리스트

근로(용역)의 대가로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를 하나요?

YES

소득자와 고용관계
(근로계약 체결 등)가
있나요?

YES

소득자에게 일급 또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나요?

YES

고용한 기간이 3개월
(건설공사종사자 1년)
미만인가요?

YES

일용
근로자

일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NO

아래 소득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시나요?

*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골프장경기보조원), 간병인, 가사
도우미(파출), 육실종사원, 중고
자동차판매원, 수하물운반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YES

NO

〈소득자 입장〉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나요?

YES

인적용역
사업자

사업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NO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기타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

용역
제공자

용역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RTI (Real Time Information)

「실시간 소득파악」이란?

기존에 연·반기·분기로 수집하던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 등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여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시에 파악하는 제도



소득자료 매월 제출주기 변경시기 안내

소득파악 방법	제출주기		
	종 전	변 경	변경시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분기	매월	'21.7.1. 이후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반기*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반기	매월	'21.7.1. 이후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	-	매월	'24.1.1. 이후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매년 2월 말일	매월	'21.11.11. 이후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반기 → 매월('26.1.1.이후 지급분부터 시행)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

매월(月) 제출·안내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

(소득세법 제164조의3)

사회적 약자·고용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시적으로 강연·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人的)용역 기타 소득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매월 제출 (소득세법 제164조의3)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 당초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되어 제출하고 있으나, '24.1.1.이후 지급분부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통해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



적용시기 '24.1.1.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구분	소득종류	제출주기	제출기한	제출서식
중전 ↓ 변경	인적용역* 기타소득	매년 ↓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

* 강연, 자문·고문, 전문직 용역 등 고용 관계없이 일시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제출시기 예시

구분	제출기한	제출서식
'23년 귀속분	'24년 2월 말일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24년 1월 지급분	'24년 2월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

적용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아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을 말함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 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출방법

홈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 제출
손택스	로그인 → 우측상단 전체메뉴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 제출
서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제정책/제도 → 세무서식에서 다운받아 작성 우편·방문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가산세

- **가산세 대상**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가산세 납부** : 미제출 등의 지급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가산세율		
지연제출	미제출	불분명·사실과 다른 제출
0.125% ¹⁾	0.25%	0.25% ²⁾

1)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한 경우

2) 불분명·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미적용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모두 미제출 또는 제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가산세율 1%)만 적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미제출 가산세 특례

- **적용내용**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미제출 가산세 면제
- **적용대상** : '24.1.1.~12.31. 기간 중 지급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 **적용내용**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한 경우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적용시기** : '24.1.1.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24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Q '24.1월 지급분부터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나요?

A 아니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1항19호(예:강연료, 자문료 등)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 제출대상입니다.



Q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면 연간 지급명세서를 안 내도 되나요?

A 네,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매월 제출한 경우 연간 지급명세서는 제출 안 해도 됩니다.



Q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 안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나요?

A 네,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24.1.1.~12.31.기간 중 지급한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해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미제출 가산세는 면제됩니다.